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00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윤준병·허성무·이성운
김교홍·박희승·장철민
민병덕·주철현·박홍배
박 정·송옥주·김윤희
서영교·김우영·서삼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

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육성에”를 “육성,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에”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추징금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

제4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u>육성에</u>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6조(기금의 설치) ----- ----- ----- ----- <u>육성,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에</u> ----- ----- ----- -----.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16. (생 략) <u><신 설></u>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 ----- ----- 1. ~ 16. (현행과 같음) 17. 「 <u>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u> 」 제21조에 따른 추징금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보조 등의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 ----- -----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 1. ~ 15. (현행과 같음) 16. 「<u>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u> <u>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u> <u>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u>」 <u>제27조에 따른 외국인의 불법</u> <u>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u> <u>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u> ② ~ ④ (현행과 같음)
---	---